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1. 6. 11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최경천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적용범위(안 제4조)
- 생활임금 결정 등(안 제5조)
- 생활임금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임기, 운영 등(안 제6조~안 제8조)
-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위원 수당 지급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로 정하면서,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- 안 제10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, 부칙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의 생활임금 지급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.
-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, 생활임금액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